







ER FORE PREM,

VALUE FOR THE PROPERTY.

explose regional-8





22 0 3 LEWONDS CHOUPY TO TOO TO THE total edepopulation

astort populates





of shopped affect





전자 문서 전자 화폐 거래 금융 실명제 공인 인증서 전자상거래 보안법 전자 서명 FIN-Tech

금융보안원









ALAF BERTHANA STA





#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LBEON

전자 문서와 전자 거래 기본법

स्मिन इश्मिश्न

老眼镜 图第









전자 금융거래법

स्थि स्थापक सम्बंध अस्





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यीयी उन्नियास

zone

weight x y 152/271 41, 9







전자 서명법

स्मिन स्थाप







## 빨리 끝내기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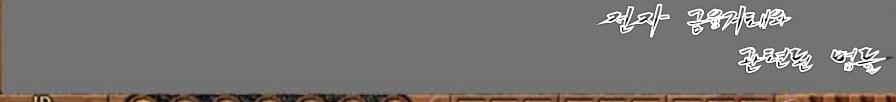
# 많이 배우기

स्मिन इ**श्मित्रक** इन्हेंस्ट्र जुस्




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 문서와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 거래 금융법 전자 서명법















योगे ३**५**गाम सम्बंध गर







स्या स्थापक सम्बंध गरि









स्थि स्थापक सम्बंध गरि







787 STOR 553 780 (4-84)





농협	우리은행	신한은행	기업은행	국민은행	하나은행
INISAFE CrossWeb EX	XecureWeb	INISAFE CrossWeb EX	XecureWeb	WizIN-Delfino G3	MyV3
AhnLab Safe Transaction	AOS	AOS		Ahnlab Safe Transaction	MyFirewall
TouchEnNxKe y	TouchEnKey			Secure KeyStroke	Secure KeyStroke
INISAFE SandBox	IPinside			nProtect	PNP4Web







제9조(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)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

- 1.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
- 2.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
- 3.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<u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</u>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
-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당하게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.5.22.〉
- 1.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 자와 체결한 경우
- 2. 법인(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)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대한 경우
- 아머 모안실자를 구입하고 이를 들지하는 무하는 항입하다고 그 기계 기계된 것 3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<u>대통령령이 정하는</u>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(이하 '약관'이라한다)에 기재된 것 이 한한다.

전자 금융 거래법 제 9조

TET SE TEN









"전자서명"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.

- 전자 서명법 제2조 2항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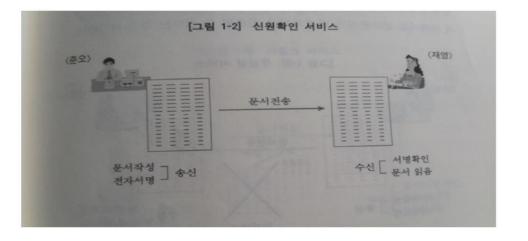






### 신원 확인

 "A가 보낸 파일을 받았다." 라고 B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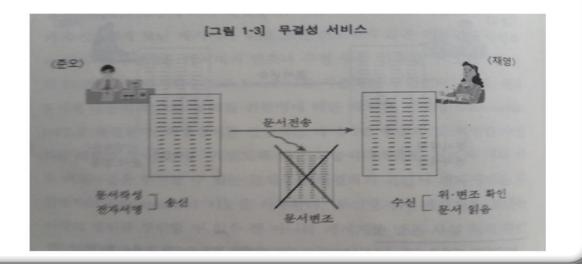






### 무결성

 "A가 보낸 파일을 누가 수정 하지 않았다." 라고 B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.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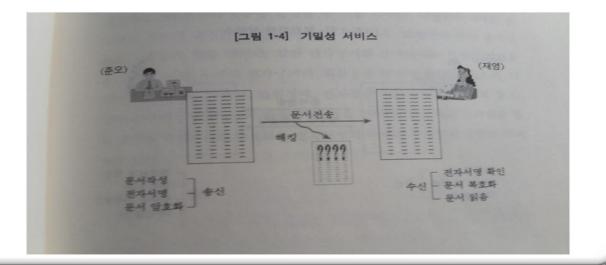






#### 기밀성

"A가 보낸 파일을 누가 읽을 수 없었다" 라고 B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.







zon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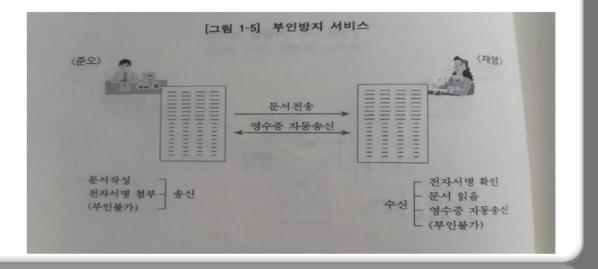
weight 152/271





#### 부인 방지

"A가 보낸 파일이 더 이상 없다" 라고 B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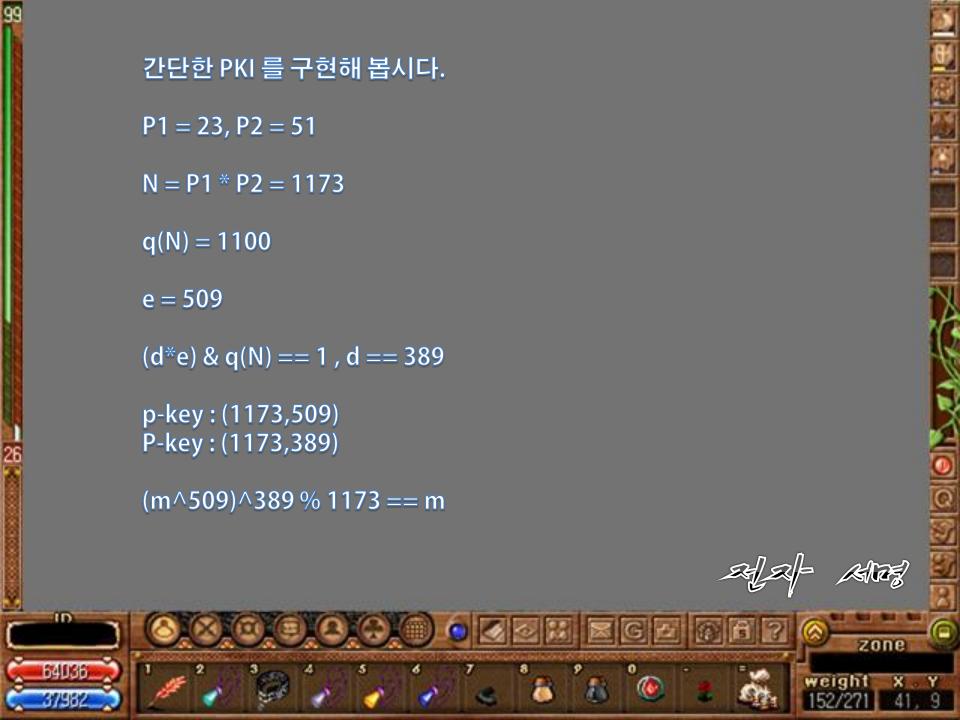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99

제26조(배상책임)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 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인인 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.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 다.

[전문개정 2005.12.30.]

[선문개정 2005.12.30.]

स्मिन साम









여러분이 보안공부를 한다는 것은

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.

컴퓨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.

